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체정	2000.	3.	28.
개정	2000.	8.	17.
개정	2001.	4.	20.
개정	2001.	12.	26.
개정	2002.	11.	6.
개정	2002.	12.	21.
개정	2003.	3.	29.
개정	2003.	5.	21.
개정	2003.	11.	4.
개정	2004.	3.	2.
개정	2004.	8.	25.
개정	2005.	6.	9.
개정	2005.	12.	23.
개정	2006.	3.	24.
개정	2007.	4.	30.
개정	2007.	8.	13.
개정	2007.	10.	11.
개정	2008.	11.	13.
개정	2009.	2.	12.
개정	2009.	10.	8.
개정	2009.	12.	17.
개정	2010.	3.	18.
개정	2010.	12.	16.
개정	2011.	8.	11.
개정	2012.	3.	15.
개정	2012.	8.	2.
개정	2013.	1.	10.
개정	2013.	7.	15.
개정	2013.	12.	5.
개정	2014.	10.	21.
개정	2016.	6.	16.
개정	2016.	10.	19.
개정	2017.	5.	26.
개정	2018.	3.	2.
개정	2018.	5.	25.
개정	2019.	2.	7.
개정	2020.	8.	14.
개정	2021.	3.	26.
개정	2021.	10.	1.
개정	2021.	11.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청소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1, 2021.10.1.>

제2조(명칭) 공단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에 두며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8·25, 2012·8·2., 2016.10.19.>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안성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출자를 현금 및 현물로 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의 공고 및 고시는 공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2003·5·21>

제6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4.30, 2010.12.16, 2011.8.11 >

1.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관리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3.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 인격형성도모를 위한 청소년 관련사업
4. 영화상영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위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위탁은 시장과 이사장 협의 하에 단계별로 위탁하되 공단 설립 시는 시장이 위탁사업을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안성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7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직원 및 하부조직) ①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2001.4.20, 2004. 3. 2, 2005. 6. 9, 2006. 3. 24, 2007. 10. 11, 2008. 11.13, 2010.12.16, 2012. 8. 2, 2013. 12. 5, 2014. 10. 21.,2016.6.16.,2017.5.26.> [전부개정 2021.10.1.]

③ 기구와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1.10.1.]

④ 삭제 <2021.10.1.>

⑤ 삭제 <2021.10.1.>

제9조(임원) ① 공단의 이사는 이사장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4인을 비상임이사로 하며, 안성시 회계담당 부서의 장을 비상임 감사로 한다.<개정2000. 8. 17, 2001. 4. 20, 2001. 12. 26, 2005. 6. 9, 2007.4.30, 2007. 8. 13, 2009.12.17, 2010.12.16, 2012. 8. 2, 2013. 7. 15, 2014. 10. 21. >

②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

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2010·3·18>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2010·3·18>

④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2010·3·18]

⑤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2010·3·18>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21. 11. 12.>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12·16., 2021. 11. 12.>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18]

제10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개정 2012·8·2>

-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직무를 겸임한다. [본조신설 2012·8·2]
- ④ 이사장 유고 시는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8·2>
- ⑤ 감사는 감사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2·8·2>

제11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2002.12.21, 2017.5.26., 2021.10.1.>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0.1.>
 2.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개정 2021.10.1.>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개정 2021.10.1.>
 4. 삭제 <2021.10.1.>
 5. 삭제 <2021.10.1.>
 6. 삭제 <2021.10.1.>
 7. 삭제 <2021.10.1.>
-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0.1.>
1. 삭제 <2021.10.1.>
 2. 삭제 <2021.10.1.>
 3. 삭제 <2021.10.1.>
- ③ 공단 직원의 결격사유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10.1.]

제13조(임·직원의 복무) 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2010·3·18>

제17조(신분보장)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고문)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10·3·18>

제2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0.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0·3·18>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2010·3·18>

제2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2010·3·18]

제25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 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

료하여야 한다.<개정2003·3·29>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 년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 적립
3. 임의적립금의 적립
4. 안성시 세입에의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 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금 보전
2. 차기이월 결손금

제5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규정의 제정) ①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4조(경영평가) ① 공단의 경영평가는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 경영평가평가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17.5.26.>

② 삭제 <2010·3·18>

③ 삭제 <2010·3·18>

제35조(공무원 파견) ①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단 정원의 1/10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0·5·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 년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한다.

제3조(설립 년도의 예산) 공단의 설립 년도의 최초 예산은 시장이 작성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2000·8·1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6>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6>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1>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29>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21>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4>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2>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8·25>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9>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3>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24>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30>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3>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1>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3>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12>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8>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 12 · 1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 3 · 18>

① (시행일)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 12 · 1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 8 · 11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 3 · 15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 8 · 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 1 · 1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 7 · 1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 12 · 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 10 · 21>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2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1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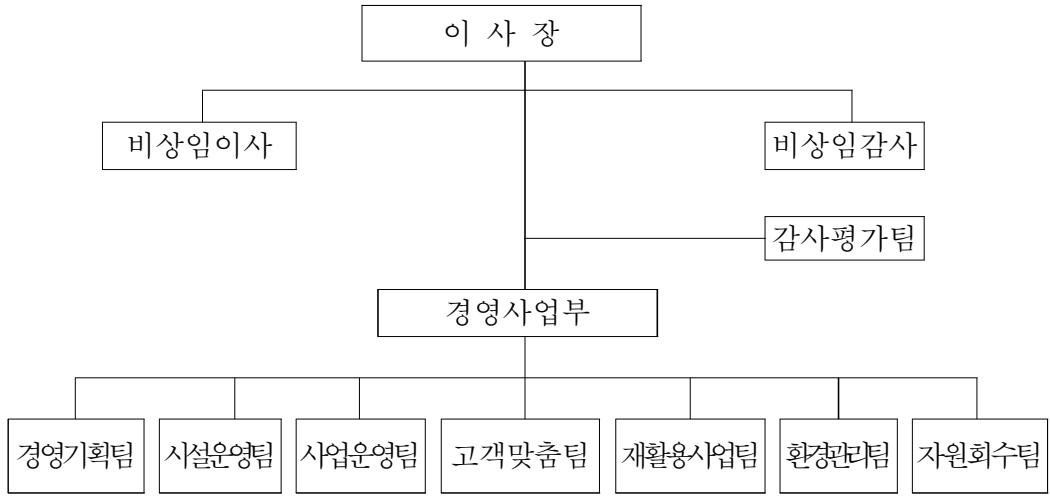
제2조(정원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2 정원표에서 감원된 공무원 3명에 대하여, 기능직 3명의 채용이 완료된 시점(2022년 2월 28일) 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11. 1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04.3.2, 2005.6.9, 2006.3.24, 2007.10.11., 2008.11.13., 2010.12.13, 2012.8.2., 2013.1.10., 2013.12.5, 2014.10.21., 2016.6.16., 2017.5.26.>

기 구 표



[별표2] <개정 2001.12.26, 2002.11.6, 2003.11.4, 2004.3.2, 2004.8.25.,
 2005.6.9., 2005.12.23., 2006.3.24., 2007.4.30., 2007.8.13, 2007.10.11,
 2008.11.13., 2009.2.12., 2009.10.8, 2010.12.16., 2011.8.11, 2012.3.15,
 2012.8.2., 2013.1.10, 2013.12. 5, 2014.10.21., 2016.6.16,
 2017.5.26., 2018.3.2., 2018.5.25. 2019.2.7., 2020.8.14., 2021.3.26.,
 2021.10.1.>

정 원 표

총원	임원	일반직	기능직	공무직
275	1	30	103	141